



제 418국회 (정기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비자단체등의 금융분야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권 신설〉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85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4. 6. 28.

다.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분야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소비자단체등의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①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이하 이 조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등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거래 분야에서의 표준약관에 대하여는 그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표준약관에 관한 일반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로, 약관법은 표준약관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약관법은 ① 원칙적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등”이라 함)가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되 ②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함)이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단체등에게 표준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고 4개월 이내에 사업자단체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직접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수 있음.¹⁾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단체등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사업자단체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① 해당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②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됨.²⁾

□ 한편 약관법의 일반적인 표준약관 규정 외에, 금융과 관련한 개별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각 법률에서는 ① 업권별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각 협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② 금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표준약관이 약관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④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 변경명령을 할 수 있음.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표 1] 법률별 표준약관 제·개정 관련 규정

구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6	여신전문금융업 법 §54의3	상호저축은행법 §18의3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표준약관 제·개정 주체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 업협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 금융협회
제·개정 절차	· 표준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에 신고·보고 · 금융위는 공정위에 표준약관 통보			
공정위 시정조치 요청	·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금융위에 통보하고 시 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변경명령	· 금융위는 각 협회에 표준약관 변경명령 가능 (자본시장법 외에는 공정위 협의 필요)			

○ 위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표준약관 시정명령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변경명령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19건이 있었음.

[표 2] 공정위의 표준약관 시정요청 및 금융위 변경명령* 현황(최근 5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자본시장법	0	0	0	0	0	0
여전법	1	0	2	1	2	6
저축은행	0	0	3	3	7	13
온투업**	0	0	0	0	0	0
계	1	0	5	4	9	19

(자료: 금융위원회)

* 건수는 조항 기준이며, 공정위 시정요청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위는 변경명령 실시 중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은 아직 표준약관이 없고, 협회에서 표준약관 제정작업 진행 중

□ 개정안은 약관법 제19조의3에 따라 제·개정되는 표준약관과 달리
개별 법률에서 제·개정절차를 규정하여 소비자단체등이 표준약관
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³⁾⁴⁾ 금융 거래 분야의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적용 범위)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위 조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 표준약관의 제·개정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표준약관 제·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등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취지로, 금융소비자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참고로, 금융 분야 중 은행권의 표준약관은 개별 법률이 아닌 약관법 제19조의3에 따라 제·개정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고, 사업자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가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하여 실제 개정한 사례⁵⁾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 개별 법령 상 표준약관을 직접 제·개정할 권한이 없고, ‘금융 거래 분야’ 범위가 불분명하여 약관법 제19조의3과의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약관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제·개정⁶⁾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 등 금융 업권별 개별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약관법 제19조의3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단체 등이 제·개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보급”, 2014.1.16.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없고, 약관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변경을 명령⁷⁾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금융 거래 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금융 거래 분야 중 자본시장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표준약관의 제·개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의 표준약관의 경우에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소비자단체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현행 약관법에 따른 일반적인 표준약관 제·개정 절차 및 금융 관련 개별 법률에서 표준약관 제·개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금융 거래 분야 중 자본시장법 등 표준약관 제·개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등이 이에 대한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약관) ⑥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표준약관으로 그
대상을 한정⁸⁾하는 방안과,

- 해당 법률에서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제정하거나 제정
하도록 명령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
의 변경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

8) 현재 금융분야 중 개별 법률에서 표준약관 제·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온라인투자연계금
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